해외사업규정 일부개정(안)

1. 제안이유

○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(이하 “리스크위원회”)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리스크위원회 구성 등 조정

○ 비투자형사업 중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리스크가 적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의사결정절차 간소화

2. 주요내용

○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 상의 “해외사업” 정의 명확화(제2조)

○ 투자형사업의 추진절차 명확화(제7조 및 제13조)

○ 해외근무직원 파견목적 범위 확대(제9조)

○ 역량개발 대상을 해외전문인력군으로 확대(제10조)

○ 리스크위원회 운영 관련 감사부서의 견제 역할 수행 등을 위하여 내부위원 구성 보완(제25조)

○ 리스크가 적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하여 의견서를 통한 서면심의 혹은 심의 생략 근거 마련(제27조)

○ 리스크위원회 회의 개의 및 의결 기준 강화(제28조)

해외사업규정 일부개정(안)

해외사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해외사업”이란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가 해외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토지 및 도시의 개발사업, 주택건설사업,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해당사업에 관련된 용역 및 자문 등을 말한다.

제4조제1호 및 동조제2호 중 “사업에 참여하는”을 “참여하는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주관부서장은”을 “투자형사업의 경우 주관부서장은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공사는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하고자 현지국가 및 관련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공사초청 연수 등 상호간 인적교류 증진방안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공사는 현지국가에서 사전조사, 국제입찰, 계약체결, 인·허가 협의, 사업관리 등의 해외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근무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10조제2항 중 “해외사업 참여직원의”를 “제1항에 따른 해외전문인력군의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및 동조제3항 중 “해외사업계획”을 “사업별 추진계획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경영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”를 “투자의사결정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여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내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리스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내부위원 및 주관부서장이 선정·위촉한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제1항의 위원 중 내부위원은 위원장, 예산담당부장, 사업심의담당부장, 조직관리담당부장, 개발담당부장(신도시·주택·산업단지), 재무담당부장, 감사담당부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며, 외부위원은 해외 건설산업에 대한 개발기획, 기술관리, 금융·세제, 계약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다.

제27조제2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리스크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, 대리참석은 불허한다.
③ 사업의 성격상 대외보안 또는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“국제개발협력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로 서면결의 하거나 해외사업담당이사의 승인을 얻어 리스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리스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별지제1호의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(제27조제1항 관련)

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출석안내서

수 신 :

년도 제 회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일 시 : 년 월 일 시

2. 장 소 :

3. 심의안건 :

가.

나.

년 월 일

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

위 원 장 인

별지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 (제27조제3항 관련)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

<u>의 견 서</u>

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

안 건 :

위원명 :

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

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의 견</td></tr>
<tr><td>심의의결</td><td>찬성( )
조건부 찬성( )
반대( )</td></tr>
<tr><td>심의의견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별지제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지 제4호서식] (제29조 관련)

(제 회)

해 외 사 업 리 스 크 관 리 위 원 회 회 의 록

(년 월 일)

일 시 : 년 월 일( )

장 소 :

총 위원수 : 인

출석위원수 : 인

위 원 장 :

위원장의 년도 제 회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개회선언 및 제안설명으로 아래와 같이 회의를 개최하고 산회한다.

회 의 목 록 표

의안번호		제안부서	
건 명 : 심의결과 : 주요의견 :			

년 월 일

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

위 의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명날인함.

위 원 장
위 원
위 원
…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	사유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해외사업"이란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토지 및 도시의 개발사업, 주택건설사업, 엔지니어링 용역사업 등을 말한다. 2~5. (생략)	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해외사업"이란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가 해외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토지 및 도시의 개발사업, 주택건설사업,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해당사업에 관련된 용역 및 자문 등을 말한다. 2~5. (현행과 같음)	-업무 정의 명확화
제4조(사업구분) 해외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투자형사업이란 공사가 현지국가에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. 2. 비투자형사업이란 공사가 현지국가에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.	**제4조(사업구분)** 해외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투자형사업이란 공사가 현지국가에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여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. 2. 비투자형사업이란 공사가 현지국가에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.	-어구 수정 -어구 수정
제7조(사업예비타당성 검토) 주관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투자여건 및 예상수익률 분석 등을 통한 사업예비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	**제7조(사업예비타당성 검토)** 투자형사업의 경우 주관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투자여건 및 예상수익률 분석 등을 통한 사업예비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	-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범위 명확화

현행	개정	사유
제8조(관련기관 등과의 협조체제 마련) 공사는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지국가 및 관련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공사초청 연수 등 상호간 인적 교류 증진방안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	**제8조(관련기관 등과의 협조체제 마련)** 공사는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하고자 현지국가 및 관련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공사초청 연수 등 상호간 인적 교류 증진방안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	-어구 수정 -어구 수정
제9조(해외근무직원 파견) 공사는 현지 국가의 사업추진 결정권자 등과의 사전 협의체제 구축을 위하여 해외근무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.	**제9조(해외근무직원 파견)** 공사는 현지국가에서 사전조사, 국제입찰, 계약체결, 인·허가 협의, 사업관리 등의 해외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근무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.	-해외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파견목적 확대
제10조(해외사업 역량 강화) ① (생략) ② 주관부서장은 해외사업 참여 직원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	**제10조(해외사업 역량 강화)** ① (현행과 같음)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외전문인력군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	-역량개발 대상 확대
제11조(사업추진반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) 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해외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1~10. (생략) ② (생략)	**제11조(사업추진반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)** 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1~10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	-업무 명확화

현행	개정	사유
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해외사업계획의 수립을 제2항에 의한 사업추진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④ (생략)	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별 추진계획의 수립을 제2항에 의한 사업추진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④ (현행과 같음)	-업무 명확화
제13조(사업 타당성심사 등) 주관부서장은 제4조의 해외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등의 검증을 위하여 제24조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되, 투자형사업의 경우 경영심의회 심의을 받아야 한다.	**제13조(사업 타당성심사 등)** 주관부서장은 제4조의 해외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등의 검증을 위하여 제24조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되, 투자형사업의 경우 투자의사결정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.	-업무 명확화
제15조(계약체결 등) ① (생략) ② 주관부서장은 계약조건 등의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**제15조(계약체결 등)** ① (현행과 같음)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	-어구 수정
제16조(해외지사 등 설립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지사 등이 기획재정부의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」에 따른 자회사 등에 해당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**제16조(해외지사 등 설립)**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지사 등이 기획재정부의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」에 따른 자회사 등에 해당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	-명칭 변경

현행	개정	사유
제25조(구성) ① 리스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공사 직원 및 주관부서장이 선정・위촉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. ② 제1항의 위원 중 공사 직원은 예산담당부장, 사업심의담당부장, 경영관리담당부장, 개발담당부장(신도시·주택·산업단지)을 포함하여 구성하며, 외부 심의위원은 해외 건설산업에 대한 개발기획, 기술관리, 금융·세제, 계약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다. ③~⑤ (생략)	**제25조(구성)** ① 리스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내부위원 및 주관부서장이 선정·위촉한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제1항의 위원 중 내부위원은 위원장, 예산담당부장, 사업심의담당부장, 조직관리담당부장, 개발담당부장(신도시·주택·산업단지), 재무담당부장, 감사담당부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며, 외부위원은 해외 건설산업에 대한 개발기획, 기술관리, 금융·세제, 계약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다. ③~⑤ (현행과 같음)	-업무분장에 따른 위원 조정 및 "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"에 의거하여 재무·감사부서의 참여 확대
제27조(운영) ① (생략) ② 리스크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, 대리참석은 불허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다. ③ 사업의 성격상 대외보안 또는 시급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외사업담당이사의 승인을 얻어 리스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.	**제27조(운영)** ① (현행과 같음) ② 리스크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, 대리참석은 불허한다. ③ 사업의 성격상 대외보안 또는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"국제개발협력"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로 서면결의하거나 해외사업담당이사의 승인을 얻어 리스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.	-서면결의 절차 및 조건 조정 -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 조정

<table>
<tr><th>현행</th><th>개정</th><th>사유</th></tr>
<tr><td>제28조(의결)
① 리스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(생략)</td><td>제28조(의결)
① 리스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(현행과 같음)</td><td>-의결기준 강화
-오타 수정</td></tr>
<tr><td>[별지 제1호서식] (제27조제1항 관련)

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출석안내서
수 신 :

년도 제 회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일 시 : 년 월 일 시
2. 장 소 :
3. 심의안건 :
가.
나.

년 월 일
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
위 원 장 인

“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집통지서 수령증”
년도 제 회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.
<table><tr><td>직 위</td><td>성 명</td><td>수령일</td><td>확 인</td></tr>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…</td><td>…</td><td>…</td><td>…</td></tr></table></td><td>[별지 제1호서식] (제27조제1항 관련)

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출석안내서
수 신 :

년도 제 회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일 시 : 년 월 일 시
2. 장 소 :
3. 심의안건 :
가.
나.

년 월 일
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
위 원 장 인

(삭제)</td><td>-불필요한 절차 생략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현행</th><th>개정</th><th>사유</th></tr>
<tr>
<td>

[별지 제2호서식] (제27조제2항 관련)

서 면 의 견
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
안 건 :
년 월 일
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

<table>
<tr><th>위원성명</th><th>의 견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</td>
<td>

[별지 제2호서식] (제27조제3항 관련)

의 견 서
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
안 건 :
위원명 :
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의 견</th></tr>
<tr><td>심의 의결</td><td>찬성( )
조건부 찬성( )
반대( )</td></tr>
<tr><td>심의 의견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</td>
<td>

-관련조항 변경
-관련조항에 따른 서식 수정

</td>
</tr>
<tr>
<td>

[별지 제4호서식] (제29조 관련)

(제 회)
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
(년 월 일)

일 시 : 년 월 일 ( )
장 소 :
총 위원수 : 인
출석위원수 : 인
위 원 장 :

의원장의 년도 제 회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개회선언 및 제안 설명으로 아래와 같이 회의를 개최하고 산회한다.

회 의 목 록 표

<table>
<tr><td>의안번호</td><td></td><td>제안부서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건 명 :
심의내용 :</td></tr>
</table>

년 월 일
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

위 의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명날인함.

위 원 장
위 원
위 원
…

</td>
<td>

[별지 제4호서식] (제29조 관련)

(제 회)
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
(년 월 일)

일 시 : 년 월 일 ( )
장 소 :
총 위원수 : 인
출석위원수 : 인
위 원 장 :

위원장의 년도 제 회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개회선언 및 제안 설명으로 아래와 같이 회의를 개최하고 산회한다.

회 의 목 록 표

<table>
<tr><td>의안번호</td><td></td><td>제안부서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건 명 :
심의결과 :
주요의견 :</td></tr>
</table>

년 월 일
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

위 의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명날인함.

위 원 장
위 원
위 원
…

</td>
<td>

-회의록 서식 오타 수정 및 조정

</td>
</tr>
</table>